

희망찬 군민 번영하는 진도



2020년 진도군 지방재정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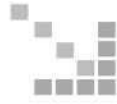
2020회계연도 예산기준

Jindo  **진도군**
JINDO COUNTY



일 러 두 기

일부 통계표의 수치는 반올림 값으로 하위분류의 합이 상위
분류의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 차

I. 지방재정 공시제도 개요	3
II. 지방재정공시 개선사항	5
III. 지방재정 공시제도 운영방안	5
IV. 진도군 지방재정공시(예산)	7
1. 공통공시 총괄	9
2. 예산규모	12
3. 재정여건	17
4. 재정운용계획	20
5. 재정운용성과	34
참고자료 1. 지방재정공시 관련 법규	37
참고자료 2. 용어 해설	49
참고자료 3. 지방재정공시 표준화면 가이드	79



1 개념 및 필요성

- 우리 군에서 추진한 지난 1년 동안의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 (홈페이지 등)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
 -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진도 군민의 이해를 돕고 군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 재정운용에 대한 자율통제 기반을 확립하여 자발적인 건전재정 운용 유도

2 제도 도입 추진경과

- '94년부터 「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 운영
 - 자치단체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등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 공개 (구.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
 - 자치단체별로 공개범위, 공개방법, 공개시기 등이 서로 상이하여 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 및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 등이 어렵다는 한계
- '06년부터 「지방재정 공시제도」 도입
 - 재정공시 대상, 공시방법, 시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규정(현행 지방재정법 제60조)
 - 기존 「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에 대한 재정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는 효과

(참고) 2020년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항목

자치단체 재정공시(21개)		행정안전부 통합공시(19개)	
분류	세부항목	분류	세부항목
예산규모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입예산 • 세출예산 • 지역통합재정통계 	예산규모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입예산 • 세출예산 • 지역통합재정통계
재정여건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자립도[당초예산] • 재정자주도[당초예산] •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재정여건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자립도[당초예산] • 재정자주도[당초예산] •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재정운용 계획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기지방재정계획 • 성인지예산 •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 성과계획서 •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국외여비 편성현황 •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 공무원 일·숙직비 -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재정운용 계획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기지방재정계획 • 성인지예산 비율 • 재정운용상황개요 • 국외여비 편성현황 •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 1인당 경비 편성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 공무원 일·숙직비 -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재정운용 성과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세출효율화)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세입확충) •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재정운용 성과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세출효율화)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세입확충) •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II

지방재정공시 개선사항

■ 재정공시 항목 추가

- (예산공시)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4-6.)' 공시 내용 중 주민 관심사항인 업무추진비, 지방의회경비 및 지방보조금을 별도 항목으로 공시
 - * 업무추진비 편성현황(4-8.),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4-9.), 지방보조금 편성현황(4-10.)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공무원 일·숙직비는 대상인원, 총 편성액 및 1인당 예산편성액을 공시(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4-11.))

■ 재정공시 서식 및 기준 개선

- 재정자립도(예산 3-1.) 및 재정자주도(예 3-2.) 공시 기준값 개선
 - 2014년 세입과목개편 이후를 기준으로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공시
 - ※ 세입과목개편 전 값은 괄호 안에 기재하고 「지방재정365」에도 공개 유지

III

지방재정 공시제도 운영방안

1 공시주체 : 진도군수

2 공시의 시기 및 작성 :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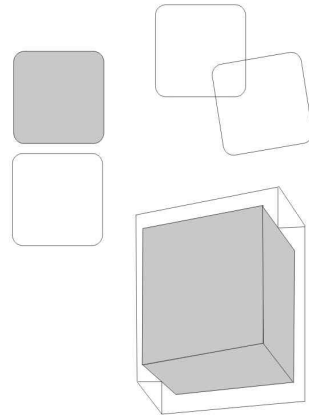
- 정기공시 : 매년 2월(당해연도 예산기준), 8월(전년도 결산기준) 총 2회 실시
- 수시공시 :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공시 시점에 작성되지 않은 항목을 작성이 가능해진 시점에 추가 공시
- 작성방법 : 공시편람을 준수하되, 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항목별 세부 사항을 업무담당자가 자율적으로 작성

3 공시방법

- 지역사회 주민들의 접근성, 편의성, 시청률, 구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
- 진도군 홈페이지, 군보 등
- 최소한 1년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한 재정공시를 유지
 - ※ 차년도 재정공시 이전까지 당해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최소 1년 이상 보관
 - ※ 1년이 경과한 재정공시 자료에 대해서도 홈페이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당 홈페이지에서 공시 자료로서 관리

4 재정공시 내용에 포함해서는 안되는 사항

-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가 있는 사항
- 정치적 공약, 국익을 저해하는 사항 등
- 국가기밀 또는 의사결정·정책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 현재 사업계획 상태에 있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
 - 다른 법률이 정하는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IV. 진도군 지방재정 공시 [예산]



1. 공통공시 총괄	9
2. 예산규모	12
3. 재정여건	17
4. 재정운용계획	20
5. 재정운용성과	34

2020년 진도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0. 2.

진도군 수(인)



- ◆ 우리 군의 '20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4,130억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87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4,180억원)보다 50억원이 적습니다.
 - 그 중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60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462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01억원입니다.
- ◆ 우리 군의 '20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8.07(23.61)%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2.20(67.73)%입니다.
- ◆ 우리 군의 '20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 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31억원의 흑자입니다.
-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은 유사자치단체 대비 전체 살림살이 규모는 50억 적으며, 재정수지는 31억원 흑자이지만,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도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자체수입을 확보하여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제고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indo.go.kr/> 정보공개/재정공시)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예산과 박인성(☎ 061-540-3025)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진도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포함 (기입예산포함)	4,130	3,259	871	4,180	3,388	792	
	세출예산포함 (기출예산포함)	4,130	3,259	871	4,180	3,388	792	
	지정영통합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8.07	7.39	0.68	7.9	7.33	0.57	
	재정자주도	52.20	60.50	△10.3	61.09	60.57	0.52	
	통합재정수지	31	14	17	16	20	△4	
재정운영계획	중기지방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영상황 개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편성현황	5	4	1	4	3	1	
	행사·추진 성현황	46	51	△5	49	40	9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1	1	-	1	1	-
		시책추진	2	2	-	2	2	-
	지방의회 관련경비	1	1	-	1	1	-	
	지방보조금	90	117	△27	110	113	△3	
1인당성 기준경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영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유사 지방자치단체 : 군-IV(붙임 참고)

※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는 세입개편 후 값임.

붙임

지방재정분석 자치단체 유형분류

지방자치단체
유형분류기준

(인구현황) ①인구규모(35%), ②인구증감률(10%), ③노령인구비율(5%)
(재정현황) ④재정력지수(35%), ⑤세출규모(10%), ⑥사회복지비비율(5%)

유형(그룹)		자치단체명					비고	
시 (75)	I (15)	경기 수원시	경기 성남시	경기 고양시	경기 용인시	경기 부천시		
		경기 안산시	경기 안양시	경기 남양주시	경기 화성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경남 김해시		
	II (21)	경기 평택시	경기 시흥시	경기 김포시	경북 구미시	경기 파주시	▶ (III→II) 양산, 거제, 군포, 이천, 오산, 양주	
		경기 하남시	경기 광주시	충남 아산시	경남 양산시	경기 의정부시		
		경남 진주시	경기 광명시	강원 원주시	경남 거제시	경기 군포시		
	III (19)	경기 이천시	경북 경주시	전남 여수시	경북 경산시	경기 오산시	▶ (IV→III) 구리, 과천 ▶ (II→III) 군산, 순천, 익산, 춘천, 충주	
		전북 군산시	경기 구리시	경기 과천시	전남 순천시	전북 익산시		
		경기 의왕시	강원 춘천시	충남 당진시	충남 서산시	경기 안성시		
	IV (20)	충북 충주시	전남 광양시	강원 강릉시	경기 포천시	전남 목포시	▶ (III→IV) 안동, 재천, 문경	
		전남 나주시	경기 여주시	경남 사천시	경북 김천시			
		경남 통영시	경북 안동시	충북 제천시	경북 김천시	충남 보령시		
	군 (82)	I (21)	대구 달성군	울산 울주군	부산 기장군	충북 진천군	경북 칠곡군	▶ (II→I) 예천, 무안, 연천, 강화, 고성(경남)
			경기 양평군	충북 음성군	전북 완주군	경기 가평군	충남 홍성군	
			경남 함안군	충남 예산군	경북 예천군	충남 태안군	전남 무안군	
			경기 연천군	강원 홍천군	경남 장녕군	인천 강화군	경남 고성군	
II (20)		경북 울진군					▶ (III→I) 증평, 단양 ▶ (III→II) 횡성, 철원, 담양 ▶ (I→II) 부여, 화순, 해남, 고흥	
		충남 부여군	충북 증평군	전남 영암군	전남 화순군	충남 금산군		
		경남 거창군	강원 평창군	전남 영광군	강원 정선군	강원 횡성군		
		전남 해남군	전북 부안군	경남 하동군	경남 함양군	전남 담양군		
III (20)		전남 고흥군	경북 성주군	충북 옥천군	강원 철원군	충북 단양군	▶ (IV→III) 고령, 울릉, 양양 ▶ (II→III) 서천, 합천, 의성, 완도, 신안 ▶ (I→III) 고창	
		충북 괴산군	충남 서천군	충북 영동군	경남 합천군	경북 고령군		
		전남 장성군	경북 의성군	전남 완도군	경남 남해군	경남 산청군		
		충남 청양군	강원 인제군	경북 청도군	전남 신안군	충북 보은군		
IV (21)		경북 울릉군	강원 영월군	전북 고창군	인천 옹진군	강원 양양군	▶ (III→IV) 의령, 영덕, 보성, 강진, 장흥, 함평	
		경남 의령군	경북 영덕군	전북 임실군	전남 보성군	전남 강진군		
		강원 양구군	전북 장수군	전남 장흥군	경북 군위군	경북 봉화군		
		전북 순창군	전북 무주군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	전남 함평군		
자치구 (69)	서울 I (13)	서울 강남구	서울 송파구	서울 서초구	서울 강서구	서울 영등포구	▶ (II→I) 중구, 성동, 동작	
		서울 마포구	서울 중구	서울 관악구	서울 양천구	서울 강동구		
	서울 II (12)	서울 노원구	서울 성동구	서울 동작구			▶ (I→II) 은평, 성북, 구로	
		서울 광진구	서울 은평구	서울 용산구	서울 성북구	서울 구로구		
	광역시 I (22)	서울 종로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중랑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도봉구	▶ (II→I) 부산 남구	
		서울 금천구	서울 강북구					
		인천 서구	인천 연수구	인천 남동구	인천 중구	부산 강서구		
		대구 달서구	대전 유성구	울산 남구	대구 수성구	대전 서구		
		부산 해운대구	울산 북구	인천 부평구	광주 광산구	대구 북구		
		인천 미추홀구	광주 북구	대구 동구	광주 서구	부산 부산진구		
		부산 남구	인천 계양구					
		대구 중구	부산 동래구	부산 사하구	부산 금정구	부산 연제구		
	광역시 II (22)	울산 중구	울산 동구	부산 사상구	대전 대덕구	대전 중구	▶ (I→II) 부산 사하구	
		부산 북구	부산 수영구	대전 동구	부산 중구	광주 남구		
		대구 서구	대구 남구	인천 동구	부산 서구	광주 동구		
		부산 동구	부산 영도구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기금포함)

-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20년도 진도군의 세입측면에서 본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12,993	322,300	-	10,225	80,469

-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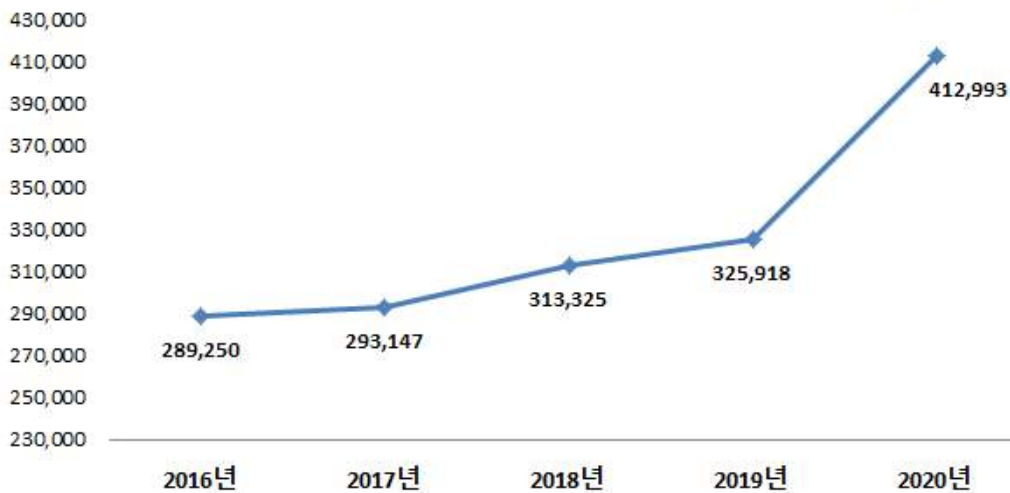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289,250	293,147	313,325	325,918	412,993

-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예산 연도별 추이

(단위 : 백만원)



- 2016년~2020년 세입예산규모의 연평균 증가율은 9.31%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년대비 870억원이 증가하여 26.72% 상승하였는데, 이는 지방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세입이 증가 및 재정안정화 기금 신규 설치에 따라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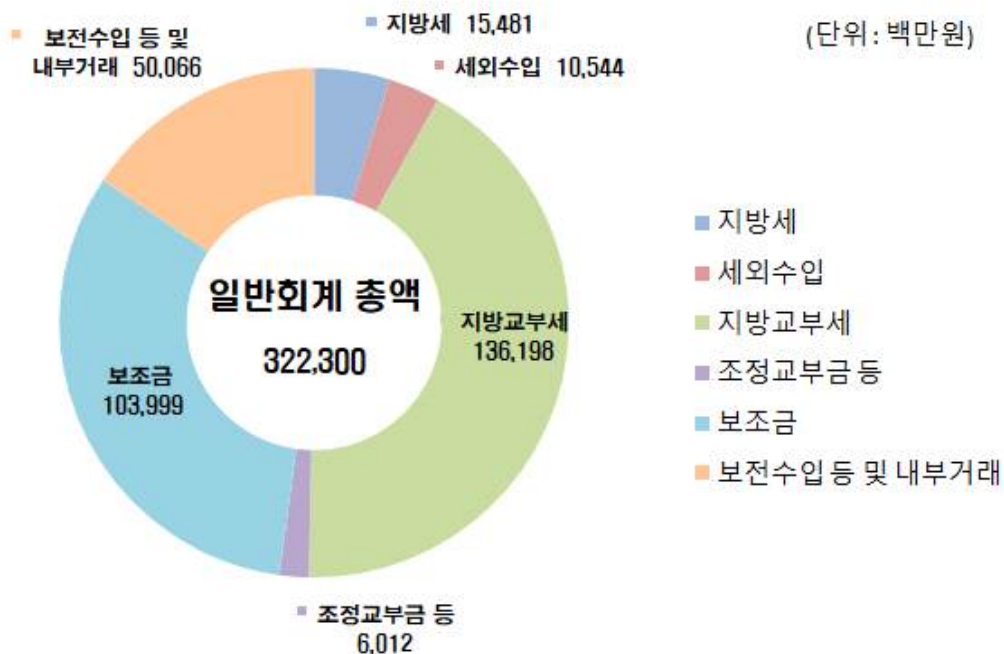
❖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 입 재 원	2016		2017		2018		2019		202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71,886	100	276,041	100	300,080	100	309,309	100	322,300	100
지 방 세	7,140	2.63	8,200	2.97	8,990	3.00	9,540	3.08	15,481	4.80
세 외 수 입	6,012	2.21	9,679	3.51	13,345	4.45	13,308	4.30	10,544	3.27
지 방 교 부 세	137,003	50.39	139,500	50.54	155,739	51.90	160,692	51.95	136,198	42.26
조정교부금 등	2,000	0.74	3,500	1.27	3,600	1.20	3,600	1.16	6,012	1.87
보 조 금	105,705	38.88	98,675	35.75	98,397	32.79	102,169	33.03	103,999	32.27
지 방 채	-	-	-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4,026	5.16	16,487	5.97	20,008	6.67	20,000	6.47	50,066	15.53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현황(2020년, 일반회계)



2-2. 세출예산(기금포함)

- 1년 동안 진도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2020년도 진도군의 세출 측면에서 본 예산규모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12,993	322,300	-	10,225	80,469

- ▶ 당초예산 총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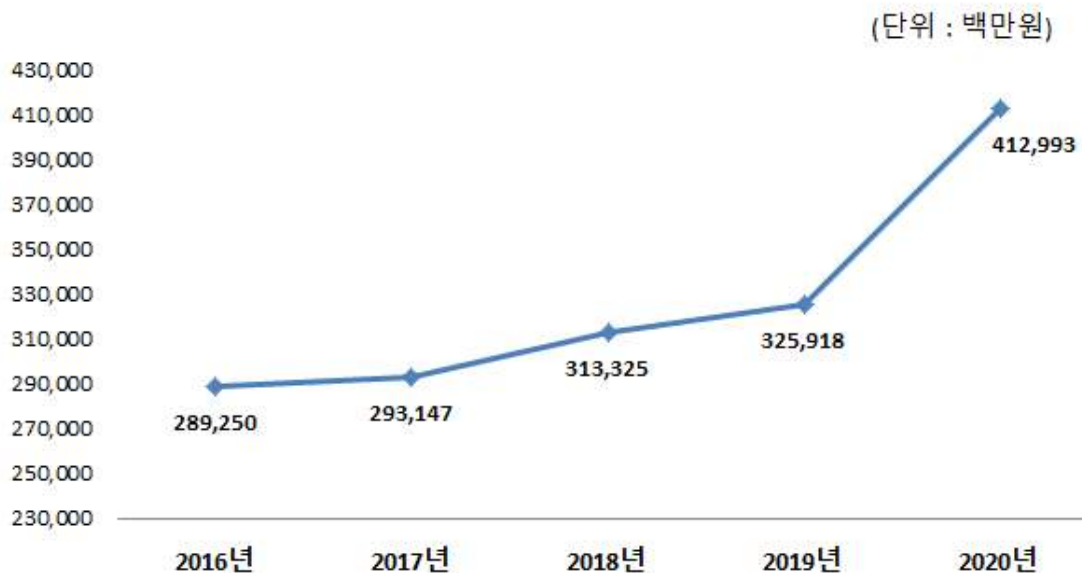
❖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289,250	293,147	313,325	325,918	412,993

-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예산 연도별 추이



- 2016년~2020년 세출예산규모의 연평균 증가율은 9.3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지속적으로 세출분야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세출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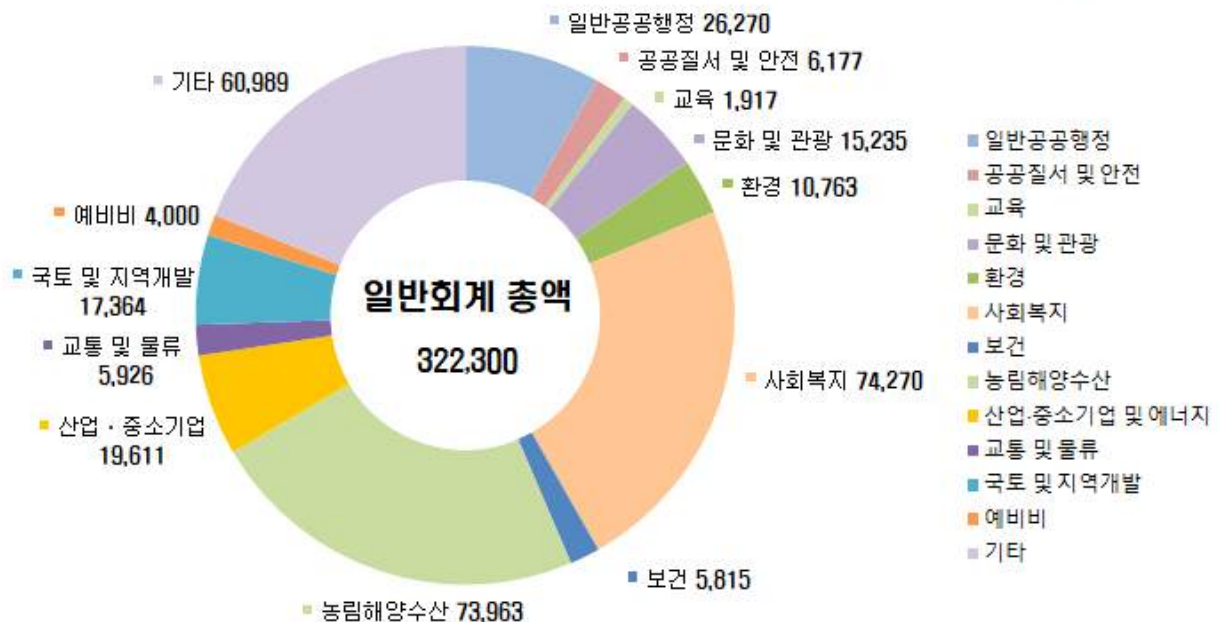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6		2017		2018		2019		202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계	271,886	100	276,041	100	300,080	100	309,309	100	322,300	100
일반공공행정	24,163	8.89	25,340	9.18	26,960	8.98	24,752	8	26,270	8.15
공공질서 및 안전	4,123	1.52	2,257	0.82	7,108	2.37	8,877	2.87	6,176	1.92
교육	1,151	0.42	1,367	0.50	1,969	0.66	1,433	0.46	1,917	0.59
문화 및 관광	16,710	6.15	15,748	5.71	20,862	6.95	17,256	5.58	15,235	4.73
환경	28,038	10.31	14,620	5.30	10,590	3.53	11,924	3.85	10,763	3.34
사회복지	51,227	18.84	53,662	19.44	51,876	17.29	55,473	17.93	74,270	23.04
보건	4,150	1.53	4,370	1.58	6,137	2.05	6,141	1.99	5,814	1.80
농림해양수산	59,801	21.99	72,469	26.25	83,641	27.87	85,644	27.69	73,963	22.95
산업·중소기업	5,159	1.90	5,002	1.81	4,404	1.47	13,638	4.41	19,611	6.08
교통 및 물류	5,518	2.03	5,040	1.83	6,359	2.12	4,705	1.52	5,926	1.84
국토 및 지역개발	19,891	7.32	22,230	8.05	24,307	8.10	17,867	5.78	17,364	5.39
과학기술	-	-	-	-	-	-	-	-	-	-
예비비	2,550	0.94	2,450	0.89	2,750	0.92	3,000	0.97	4,000	1.24
기타	49,406	18.17	51,487	18.65	53,116	17.7	58,599	18.95	60,989	18.92

▶ 당초예산 총계기준

분야별 현황(2020년,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2-3. 지역통합재정통계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진도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당초예산 (A)	2020년 예산 (B)	증감액 (B - A)	비율 (B-A)/A
합 계	327,704	415,340	87,637	26.74
진 도 군	325,918	412,993	87,076	26.72
출자·출연기관	1,786	2,347	561	31.42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 출자출연기관(1개) : 재단법인 진도군 인재육성장학회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http://www.jindo.go.kr/home/sub.cs?m=61>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0년도 진도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8.07(23.61)%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8.07 (23.61)	322,300 (322,300)	26,025 (76,091)	246,209 (246,209)	- (-)	50,066 (-)

- ▶ 일반회계기준,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0
4.84 (10.00)	6.48 (12.45)	7.44 (14.11)	7.39 (13.85)	8.07 (23.6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2019년에 비해 2020년에는 0.69%p 상승한 8.07%이며, 지속적으로 자체세입(지방세+세외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자체와 비교하여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높은 편입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사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0년도 진도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2.20(67.7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52.20 (67.73)	322,300 (322,300)	168,235 (218,300)	103,999 (103,999)	- (-)	50,06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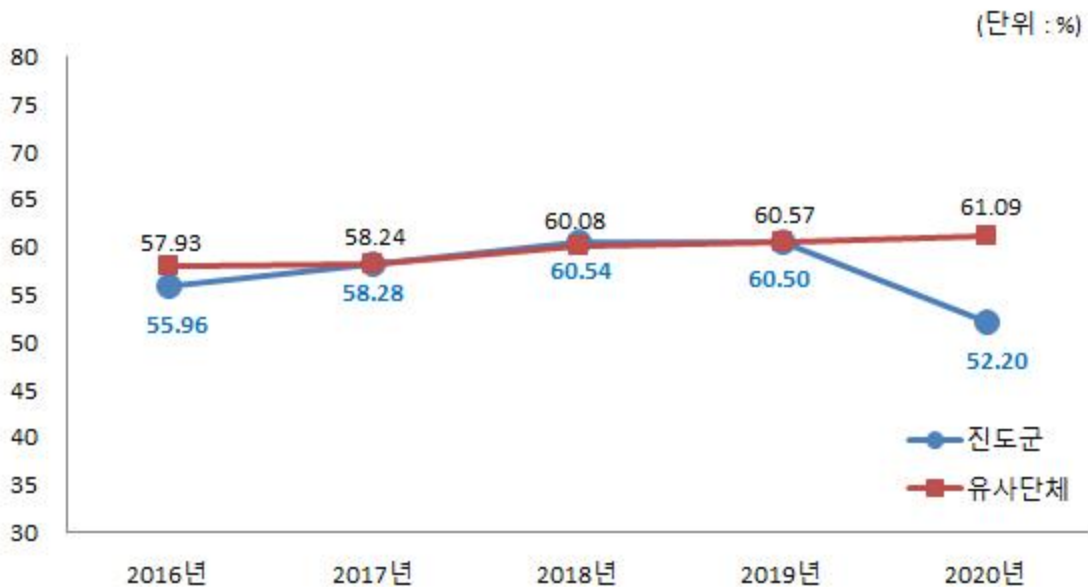
- ▶ 일반회계 기준,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0
55.96 (61.12)	58.28 (64.25)	60.54 (67.21)	60.50 (66.97)	52.20 (67.73)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우리군의 2020년 재정자주도는 52.20%로 전년대비 8.3%p 감소하였고, 작년대비 자체세입은 증가하였으나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감소로 자주재원의 비중이 감소하여 금년에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 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진도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계 규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 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273,626	321,822	25	50	25	51,301	321,848	△48,222	3,097
일반회계	272,234	312,365	-	-	-	50,000	312,365	△40,132	9,868
기타 특별회계	1,093	9,163	25	50	25	1,301	9,188	△8,096	△6,795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	-
기 금	300	294	-	-	-	-	294	6	6

-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통합재정수지 1	△13,496	△15,761	△19,728	△19,682	△48,222
통합재정수지 2	1,452	1,588	1,322	1,429	3,079

☞ 2020년 당초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순세계잉여금을 포함 시에는 30억원의 흑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을 제외 시 482억원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진도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578,488	594,661	613,730	638,640	704,250	3,129,769	5.00
자 체 수 입	26,136	27,209	26,369	28,030	29,565	137,309	3.10
이 전 수 입	400,951	413,007	430,693	450,331	512,789	2,207,771	6.30
지 방 채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51,401	154,445	156,669	160,279	161,895	784,689	1.70
세 출	578,488	594,661	613,730	638,640	704,250	3,129,769	5.00
경 상 지 출	181,800	183,576	185,961	187,852	189,660	928,849	1.10
사 업 수 요	396,688	411,085	427,769	450,788	514,590	2,200,920	6.70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 연평균 증가율 = $[(\text{최종연도}/\text{기준년도})^{1/(\text{전체연도 수} - 1)} - 1] \times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진도군의 2020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118	43,175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3	1,343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70	14,349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35	27,483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http://www.jindo.go.kr/home/sub.cs?m=722>

●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 기준	-예산편성 한도 설정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 다음은 진도군의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1,135	-	-	1,135

❖ 2020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액			1,135	
일반참여 예산사업	건설 교통과	분토 ~ 정자 간 위험도로 선형개량 사업	300	신규사업
		신비의 바닷길 입구 삼거리 옹벽 및 발광형 도로표지판 설치	20	〃
		칠전리 사곡제 일원 배수로 정비	50	〃
		침계리 배수로 개거공사	40	〃
		사하리 배수로 정비	50	〃
		상만마을 배수로 개거 및 법면 블록설치	45	〃
		상만리 안길 정비	40	〃
		상보전 배수로 정비	30	〃
		소포리(안치리) 배수로 개거	100	〃
		안치리 마을안길 정비	50	〃
		수양리 배수로 개거	200	〃
		관마리 배수로 개거	40	〃
		가치리 배수로 개거	60	〃
		조도초교 어린이보호구역 아스콘 포장	60	〃
	창유리 맨홀 정비	30	〃	
진도항만 개발과	수유리 급경사지 옹벽 그물망 설치	20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http://www.jindo.go.kr/home/board/B0103.cs?m=623>

4-4. 성과계획서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진도군의 2020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21	131	208	278	392,333	320,326	72,007
기획예산과	1	2	3	8	6,999	8,011	△1,012
일자리투자과	1	6	6	7	3,722	2,201	1,521
행정과	1	7	11	18	59,232	55,583	3,648
주민복지과	1	11	16	31	77,118	55,176	21,942
민원봉사과	1	7	9	9	1,542	1,230	312
세무회계과	1	5	6	10	2,571	2,200	370
관광과	1	6	18	10	5,929	7,510	△1,581
문화예술체육과	1	6	6	12	11,300	8,976	2,324
건설교통과	1	16	18	26	29,787	28,844	943
지역개발과	1	8	11	11	20,514	12,824	7,690
진도항만개발과	1	8	10	11	23,578	7,979	15,599
경제마케팅과	1	14	17	19	35,609	24,425	11,184
농업지원과	1	4	14	19	35,651	25,863	9,788
수산지원과	1	4	7	11	13,642	18,527	△4,885
진도개축산과	1	4	8	10	3,946	3,490	456
환경산림과	1	8	15	18	12,272	11,156	1,116
의회사무과	1	1	4	2	841	683	158
보건소	1	1	4	8	7,223	7,161	62
농업기술센터	1	7	17	26	7,923	7,531	391
상하수도사업소	1	3	5	6	23,429	21,569	1,860
시설관리사업소	1	3	3	6	2,272	2,078	194
읍면사무소	1	-	-	-	7,236	7,311	△74

-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http://www.jindo.go.kr/home/sub.cs?m=61>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8.07	52.2	23.04	22.67	55.63	186.06

-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는 세입과목 개편 후 기준 금액
 -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 <http://gyeyak.jindo.go.kr/ebudget/>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0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332,524	478	63	415	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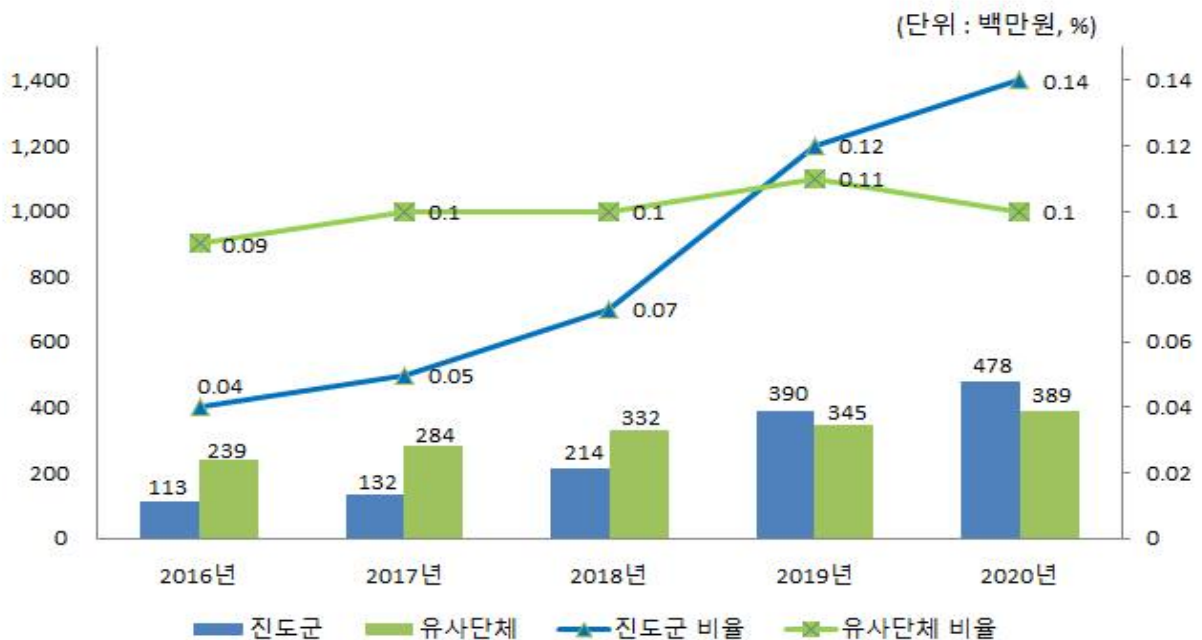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예산총계(A)	284,924	288,448	308,004	320,326	332,524
국외여비 총액 (B=C+D)	113	132	214	390	478
국외업무여비(C)	17	22	4	34	63
국제화여비(D)	96	110	210	356	415
비율	0.04	0.05	0.07	0.12	0.14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 다음은 우리 진도군이 2020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322,300	4,598	1.43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0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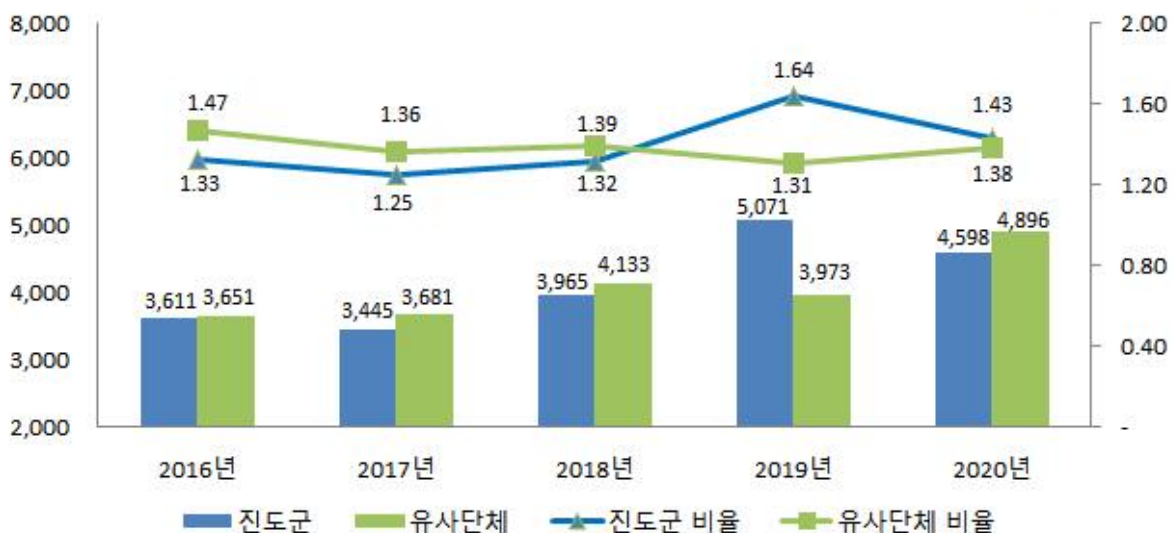
❖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예산액	271,886	276,041	300,080	309,309	322,300
행사·축제경비	3,611	3,445	3,965	5,071	4,598
비율	1.33	1.25	1.32	1.64	1.43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단위 : 백만원, %)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진도군의 2020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예산편성액	부단체장 예산편성액	
163	80	48	33	0.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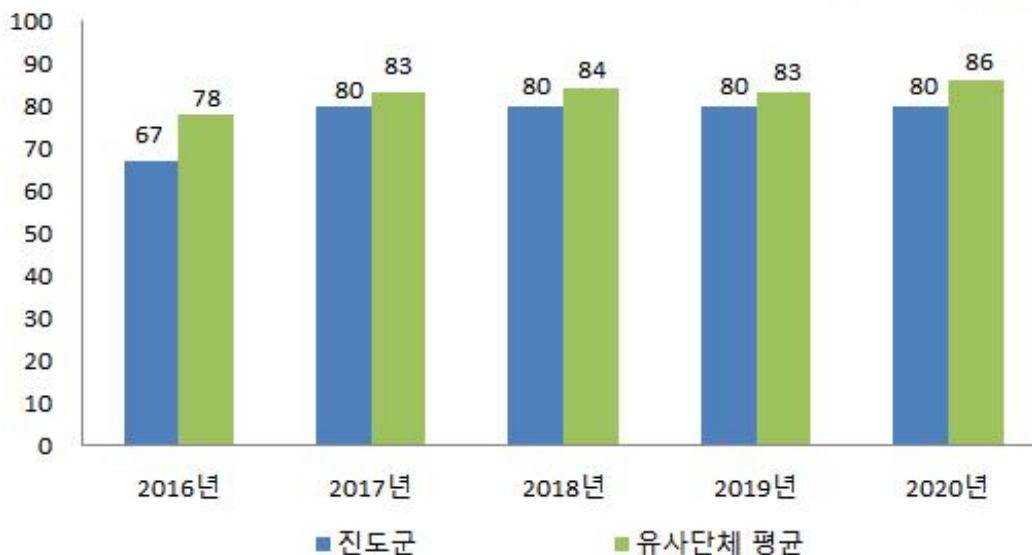
❖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67	80	80	80	8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단위 : 백만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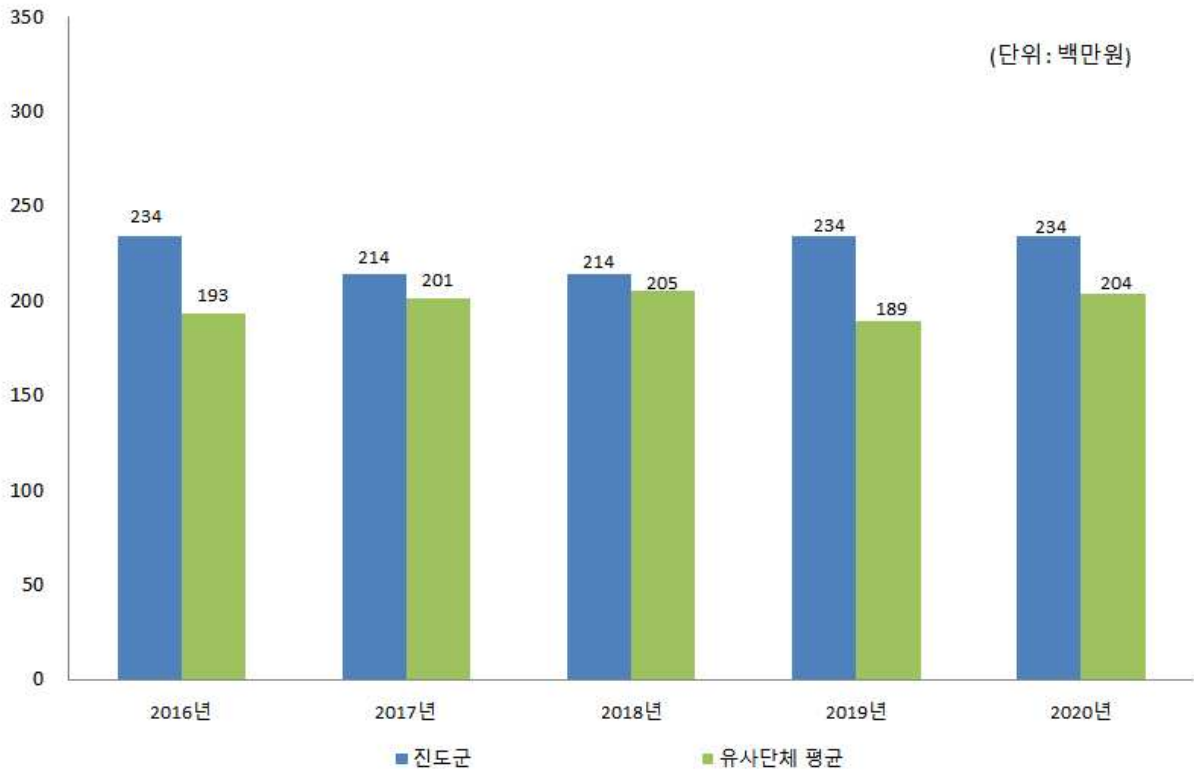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34	234	1

❖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234	214	214	234	23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 우리 진도군의 2020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139	119	52	45	18	5	0.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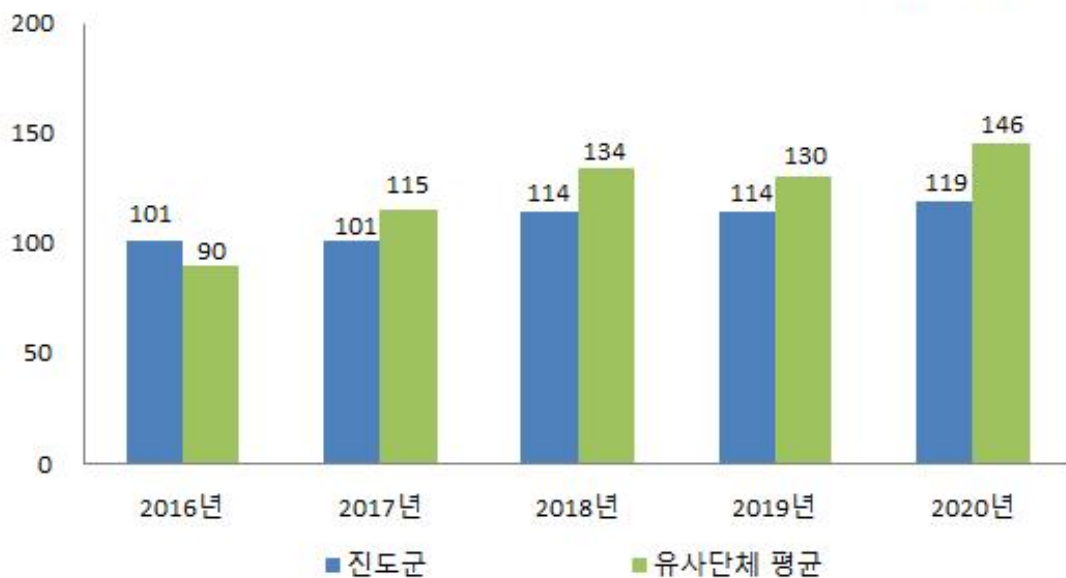
❖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101	101	114	114	119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단위 : 백만원)



-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 우리 진도군의 2020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B)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16,114	8,988	55.77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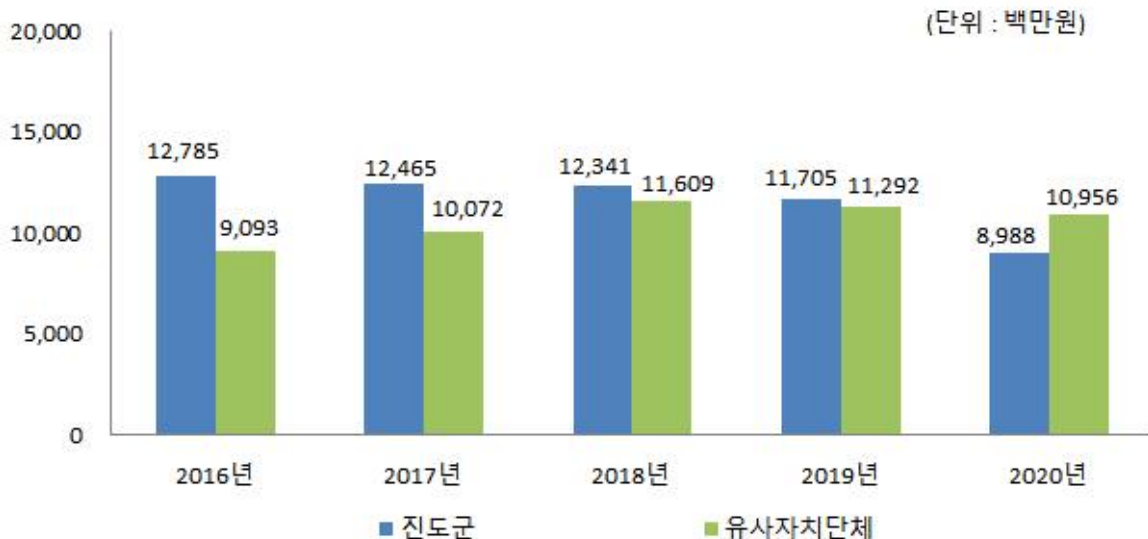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12,785	12,465	12,341	11,705	8,988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도군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명, 백만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192	1,366	1.15
공무원 일·숙직비	1,516	91	0.06
이장 활동보상금	242	1,137	4.7
반장 활동보상금	722	36	0.05

-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 하세요(<http://lofin.mois.go.kr>)
- ▶ **지방의회관련경비** :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 (1 + 0.297)) +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 (1 + 0.176)) + (의원 국외여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 (1 + 0.05)) +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 (1 + 0.297))}
- ▶ **지방보조금 기준액은** : 전년도 기준액(한도액)×(1+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 증감률), 기준액(17년 13,978백만, 18년 14,925백만원, 19년 15,522백만원) 평균증감률 7.09%
- ▶ **맞춤형복지제도** : 1.146백만원/1인당×1,192명 = 1,366백만원
- ▶ **일숙직비** : 1일(1야)당 기준액 60,000원이며, 근무여건 고려하여 20%범위내 자율
- ▶ **이장활동보상금** : 242명×4.7백만원* = 1,137백만원
*기본수당 월300,000원 이내 상여금 연 200%, 회의참석수당 1회 20,000원(월 2회)
- ▶ **반장활동보상금** : 722명×0.025백만원×2회/1년 = 36백만원

5 재정운용성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9년	2020년
계	3,775	79
인건비 절감	129	504
지방의회경비 절감	9	23
업무추진비 절감	69	99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882	△481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2,686	△190
지방청사 관리·운영	-	-
읍면동 통합운영	-	-
민간위탁금 절감	-	-
잉크자리창출	-	49
자치단체간협력	-	75

- ▶ 2020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9.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9년	2020년
계	△685	△2,068
지방세 징수율 제고	178	△138
지방세 체납액 축소	△83	△377
경상세외수입 확충	177	714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957	△2,267
탄력세율 적용	-	-
지방세 감면액 축소	-	-

- ▶ 2020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9.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 인센티브,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2020년에 진도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해	당 없	음

-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홈페이지 : [http://lofin.mois.go.kr\(지방재정365\)/재정데이터 개방/데이터셋/지방교부세 감액현황](http://lofin.mois.go.kr(지방재정365)/재정데이터 개방/데이터셋/지방교부세 감액현황)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2020년에 진도군이 각 종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해	당 없	음

-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홈페이지 : [http://lofin.mois.go.kr\(지방재정365\)/재정데이터 개방/데이터셋/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http://lofin.mois.go.kr(지방재정365)/재정데이터 개방/데이터셋/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지방재정공시 관련 법규

- 지방자치법, 시행령 39
- 지방재정법, 시행령 41
- 지방회계법, 시행령 48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p>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 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p> <p>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p>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p> <p>제133조(예산의 이송·고시등)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예산안이 의결되면 3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이송받으면 지체없이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8조에 따른 재의요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p>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의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34조의2(지방자치단체가 없어진 때의 결산)</p> <p>①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없어진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은 없어진 날로써 마감하되,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었던 사람이 이를 결산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결산은 제13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인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제5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 ①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6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12월 중에 열어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 중에 열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p>③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p> <p>제38조(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p> <p>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 재정의 운용 여건, 지방재정제도의 개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필요한 정보로 구성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할 수 있다.</p> <p>②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지출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p> <p>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2.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3.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4.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 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 6.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예산액 기준) 7. 성인지 예산서 8. 성과계획서 9.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 10. 명시이월 명세서 11.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2. 공유재산 관련 서류 13. 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 관련 서류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p>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 2. 통합부채[「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이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의 부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채를 포함한 부채를 말한다. 이하 같다]</p> <p>3. 우발부채(보증협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p> <p>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p> <p>5.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p> <p>6. 지방교부세 감액사항</p> <p>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p> <p>8. 지방세지출현황</p> <p>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③ 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는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p> <p>제55조(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에 따른 재정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야 한다.</p> <p>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거나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할 수 있다.</p> <p>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으며,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의 중요 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재정분석·진단 실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그 분석을 위탁할</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수 있다.</p> <p>제59조(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이하 "지역통합재정통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교육감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를 포함한다) 및 기금 2. 지방공기업의 재정상황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지역통합재정통계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p> <p>④ 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의 방법, 기준, 절차 등은 교육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p> <p>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포함한다) 2. 재무제표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3. 채권관리 현황</p> <p>4. 기금운용 현황</p> <p>5.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p> <p>6. 지역통합재정통계</p> <p>7.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p> <p>8. 중기지방재정계획</p> <p>9.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p> <p>10.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p> <p>11.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p> <p>12.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및 그 이행현황</p> <p>13.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p> <p>14.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p> <p>15. 지방보조금 관련 다음 각 목의 현황</p> <p>가. 교부현황</p> <p>나. 성과평가 결과</p> <p>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p> <p>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p> <p>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p> <p>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보거나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등에</p>	<p>제68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 운용상황을 공시하는 경우 일반적인 재정운용 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공통공시"라 한다)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특수공시"라 한다)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p> <p>②공통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 2. 지방재정분석·진단의 결과 3.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4.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p>③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정한다.</p> <p>④ 삭제</p> <p>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p>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을 공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의회와 시·군·자치구의 경우는 시·도지사에게,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자치구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p> <p>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시와는 별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세부사업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60조의2(통합공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0조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공시하되,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공시를 할 수 있다.</p> <p>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0조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공시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정공시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청에 따라 수정공시를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정공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공시할 수 있다.</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제87조의3(지방재정건전성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전년도 및 전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 해당 회계연도의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추정액 3.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건전성 관리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부채와 우발부채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p> <p>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부채, 우발부채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p>	

▣ 지방회계법

지방회계법	지방회계법 시행령
<p>제18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성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인지 결산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5조(성인지 결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인지 결산의 개요 2. 성인지 예산의 집행실적 3.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p>② 성인지 결산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작성한다.</p>

참고자료3

용어 해설

색 인

- 가용재원 (可用財源)
- 감채기금 (減債基金, sinking fund reserve)
- 결산 (決算)
- 계속비 (繼續費, continuing expenditure)
- 공유재산 (公有財產)
- 관리채무상환비율 (管理債務償還比率)
- 국고보조 (國庫補助)
- 국고보조금 (國庫補助金, state subsidy)
- 국세 (國稅)
- 금고 (金庫)
- 기금 (基金)
- 기본경비 (基本經費)
- 당기순이익 (當期純利益)
- 민간이전경비 (民間移轉經費)
- 민간투자사업 (民間投資事業)
- 명시이월비 (明示移越費)
- 목적세 (目的稅)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發生主義 複式簿記會計)
- 보증채무부담행위 (保證債務負擔行爲)
- 보통세 (普通稅)
- 부담금 (負擔金)
- 부채 (負債)
- 불용액 (不用額)
- 비용 (費用)
- 사고이월 (事故移越)
- 사업예산제도 (事業豫算制度)
- 성과주의 예산제도 (成果主義 豫算制度)
- 성별영향평가사업 (性別影響評價事業)
- 성인지 예산제도 (性認知 豫算制度)
- 수익 (收益)
- 세계잉여금 (歲計剩餘金)
- 세외수입 (稅外收入)
- 세입 (歲入)
- 세입세출외현금 (歲入歲出外現金)
- 세출 (歲出)
- 수의계약 (隨意契約)
- 순계예산 (純計豫算)
- 순세계잉여금 (純歲計剩餘金)
- 시·도비보조금 (市·道費補助金)
- 시·군 조정교부금 (市·郡 調整交付金)
- 예비비 (豫備費)
- 예산 (豫算, budget)
- 예산과목 (豫算科目)
- 업무추진비 (業務推進費)
- 여성정책추진사업 (女性政策推進事業)
- 인건비 (人件費)

- 예산대비 채무비율(豫算對比 債務比率)
- 예산안의 의결(豫算案의 議決)
- 예산의 전용(豫算의 轉用)
- 예산의 종류(豫算의 種類)
- 예산의 확정(豫算의 確定)
- 예산편성한도액(豫算編成限度額)
- 예산총계주의(豫算總計主義)
- 이전수입(移轉收入)
- 일반재원과 특정재원(一般財源과 特定財源)
- 일반회계(一般會計)
- 일시차입금(一時借入金)
- 잉여금(剩餘金)
- 자본지출(資本支出)
- 자산(資產)
- 자체수입(自體收入)
- 자치구 조정교부금(自治區 調整交付金)
- 재정건전화계획(財政健全化計劃)
- 재정분석(財政分析)
- 재정자립도(財政自立度)
- 재정자주도(財政自主度)
- 재정진단(財政診斷)
- 조세지출예산제도(租稅支出豫算制度)
- 주민참여예산제도(住民參與豫算制度)
- 중기재정계획(中期財政計劃)
- 지방공기업(地方公企業)
- 지방교부세(地方交付稅)
- 지방교육재정교부금(地方教育財政交付金)
- 지방세(地方稅)
- 지방의회경비(地方議會經費)
- 지방재정조정제도(地方財政調整制度)
- 지방채(地方債, local bond)
- 지방채 발행계획(地方債 發行計劃)
- 지방채발행 한도액(地方債發行 限度額)
- 지출결의서(支出決議書)
- 지출원인행위(支出原因行爲)
- 채권(債權)
- 채무부담행위(債務負擔行爲)
- 총계예산(總計豫算)
- 추가경정예산(追加更定豫算, supplementary budget)
- 출납폐쇄기한(出納閉鎖期限)
- 출연금(出捐金)
- 출자금(出資金)
- 최저임수입보장(MRG)
- 통합재정수지(統合財政收支)
- 투자사업 심사(投資事業 審査)
- 특별교부세(特別交付稅)
- 특별회계(特別會計)
- 품목별 예산(品目別 豫算, line-item budgeting)
- 회계(會計)
- 회계연도(會計年度)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會計年度 獨立의 原則)

재정공시 관련 재정용어 해설

● 가용재원 (可用財源)

일반적으로 가용재원은 의무적인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자치단체가 필요한 투자사업에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함

세입에서 법적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비(인건비, 기준경비, 법정교부금, 각종 보조금의 지방비부담, 채무상환비, 법령이나 조례로 협약을 맺어 지출해야 하는 경비 등) 등을 뺀 나머지를 가용재원으로 산출하거나,

계속해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 지방채무가 투입된 사업, 자치단체의 기관운영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까지 제외시켜 산출하기도 함

● 감채기금 (減債基金, sinking fund reserve)

지방채 상환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미리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기금임. 자치단체마다 지방채의 상환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매연도마다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금액)을 채무상환용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채 원금의 확실한 지급을 표시함으로써 지방채의 신용과 담보능력을 강화시키고 일시에 거액의 상환자금이 유출되더라도 지장을 주지 않는 효과가 있음

● 결산 (決算)

결산은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에 근거한 수입과 지출의 최종적인 결과를 확정 집계한 계산서이며, 또한 1년 동안 세출예산을 집행한 결과 어떠한 성과를 나타냈는가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1년간 행·재정적 실적 보고이기도 함

결산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음

첫째, 결산은 사후적인 특징을 가짐. 행정기관 등의 예산운용 결과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심사하는 것이 결산임. 둘째, 결산은 정치적인 특성을 가짐. 위법·부당한 지출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무효화 할 수 없으나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셋째, 결산은 집행의 책임을 확인하고 해제하는 특성을 지님. 의회의 심사가 종결되는 경우 예산운용주체의 책임이 해제되는 의미를 가짐. 그러나 관계공무원의 부정행위 및 위법행위에 따르는 변상 책임이나 형사책임까지 해제되는 것은 아님

● 계속비 (繼續費, continuing expenditure)

계속비는 사업을 완료하는 데 수년이 걸리고 1년 단위의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 완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비총액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놓는 방식임

계속비를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계속비는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을 전부 지출하지 못한다 해도 그 잔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를 다음 연도에 순차적으로 이월하여 다음 연도의 연도별 금액에 가산하여 지출할 수 있음

● 공유재산 (公有財産)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함

공유재산은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며, 행정재산은 다시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으로 분류됨

지방자치단체의 장(長)은 공유재산을 관리,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매년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 관리채무상환비율 (管理債務償還比率)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도하고 재정의 위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재원으로 지방채무의 충당능력을 산정하는 지표를 말하며 이는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의 하나의 기준으로 사용됨

$$\text{관리채무상환비율} = \frac{\text{미래 4년간 순 지방비로 상환할 평균관리채무액}}{\text{미래 4년간 경상일반재원 평균수입액}} \times 100$$

* 관리채무 = 일반채무* + BTL 임차료 총액

* 일반채무 = 지방채 + 채무부담행위 + 보증채무이행책임 확정액의 잔액기준 ※ 이자 제외

* 경상일반재원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경상적세외수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 국고보조 (國庫補助)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부담금, 교부금, 보조금(협의)을 포괄해서 국고보조라 함
국고보조는 사업비의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식과 사업비의 일부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는 방식이 있는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기로 결정 통지한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 (國庫補助金)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장려하거나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의 경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함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서 지정한 용도에만 국고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지방비 부담을 조건으로 보조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음. 국고보조의 대상은 각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지만 그 예산 및 관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되어 있음

● 국세 (國稅)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며, 중앙정부 재정의 근간이 됨.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수입은 이러한 국세수입을 위주로 구성됨

국세는 통관절차를 거치는 물품에 부과하는 관세, 관세를 제외한 조세인 내국세, 그리고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며 내국세는 다시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 등의 직접세와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인지세·증권거래세 등의 간접세도 구분됨. 국세는 모두 14개의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음

● 국세의 조세체계 (14개 세목)

- 내국세 :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 보유세 : 종합부동산세
 - 목적세 : 종합부동산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관세
-

● 금고 (金庫)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출납기관을 말하며 일종의 주거래은행이라 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등 기타의 업무를 취급케 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 운영하고 있음

한국은행 이외에 은행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 중에서 하나를 금고로 지정할 수 있으며 경쟁입찰방식 등으로 투명한 절차를 거치고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큰 혜택을 주는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금 (基金)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조례에 의하여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기금은 특정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지나치게 남발하게 되면 예산집행을 감독하고 지출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주기도 함

이러한 이유로 기금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되어야 하며, 설치했다 해도 운용기한을 정하여 의도한 목적이 달성되면 폐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부작용은 줄이고 긍정적인 효과는 높이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음

● 기본경비 (基本經費)

지방자치단체가 부서(실, 과)를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행정사무비를 말하며 인건비, 직급보조비, 포상금, 여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이 해당함

● 당기순이익 (當期純利益)

기업이 일정기간 벌어들인 모든 이익에서 모든 비용과 손실을 뺀 차액을 의미함

순이익이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판매비, 관리비 등을 빼고 여기에 영업외 수익과 비용, 특별 이익과 손실을 가감한 후 법인세를 뺀 것임

● 민간이전경비 (民間移轉經費)

민간이 시행하는 사무,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를 말하며 일종의 민간이전 보조금에 해당함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복지보조 등이 있으며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는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별로 한도액을 정하고 자치단체는 이 한도액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 운영하여야 함

특정 민간사업자에 중복 지원되거나 부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지는 등의 부작용도 있어 일몰제 적용이 원칙이며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계속 지원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민간투자사업 (民間投資事業)

정부의 영역으로 간주되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민간이 투자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며 1994년에 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이 1999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어 법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음

민간투자사업은 교육, 복지, 문화, 도로, 철도 등 국민경제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정부가 시행하지 못하는 사업, 또는 민간의 투자와 경영으로 효율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 대상임

민간투자사업은 추진방식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나 우리나라는 BTO(Build - Transfer - Operate)와 BTL(Build-Transfer-Lease)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

BTO는 수익성이 있는 도로, 터널, 경전철, 교량 등에 민간사업자가 투자하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지불하는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며 BTL은 민간사업자가 미술관, 문화회관 등을 건설하고 정부가 이 시설물을 임대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됨

● 명시이월비 (明示移越費)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국가의 경우 국가재정법)에서 인정된 세출예산의 이월제도임

● 목적세 (目的稅)

조세는 특정한 지출목적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세출예산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보통세가 일반적인데 목적세는 예외적으로 특수용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의미함

현재 목적세에는 국세로는 교육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가 있고, 지방세로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음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發生主義 複式簿記會計)

수익과 비용을 현금의 나가고 들어는 시점이 아니라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인식하는 개념임. 즉, 현금의 수지에 관계없이 수익 및 비용과 관련된 경제적 사실이 발생하면 발생한 시점에서 손익을 계상하는 방식으로 회계를 처리함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발생주의에 입각한 복식부기회계제도를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의 운영성과(수익, 비용)와 재정상태(자산, 부채, 순자산)의 변동내역이 담긴 재무제표를 작성해 의회, 주민 등에게 보고하고 있음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들이 정부개혁의 수단으로 채택하여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제도이며 지방자치단체도 비용과 수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업성과를 보다 엄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며, 예산낭비를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음

● 보증채무부담행위(保證債務負擔行爲)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음(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

그러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재정위험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음(지방재정법 제13조)

● 보통세 (普通稅)

일반적인 재정수요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써 특별한 목적의 재정수요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인 목적세에 대응함

국세의 보통세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관세 등이 있으며,

지방세로서 보통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이 이에 속함

● 부담금 (負擔金)

특정한 공익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은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 의무를 말함

부담금은 특정사업의 경비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과하는 것인 점에서 일반국민에게 균등하게 부과되는 조세와 구별되며, 사업자체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분담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개개의 이용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이용자에게 대하여서만 과하는 수수료·사용료와도 구별됨

부담금의 유형에는 ① 당해 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수익자부담금, ② 당해 공익사업에 손상을 주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사업의 유지·수선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손상자부담금, ③ 특정한 사업의 원인을 일으킨 자에 대하여 그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부담금 등이 있음

● 부채(負債)

지방채무(local debts, municipal debts)는 현금의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은 차입금, 지방채증권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반면에 부채(liabilities)는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원리에 따라 경제적 자원을 상환할 의무가 발생하면 발생한 시점부터 부채로 계상하는데, 지방채무 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 퇴직금 충당금, 카드결제에 의한 미지급금, 선수금 등도 부채에 포함됨

지방채무는 현금주의 단식부기 기준, 부채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기준으로 인식하는 차이가 있으며 부채가 지급의무의 대상을 더 폭넓게 받아들이고 있어 지방재정 건전성을 파악하는 데 장점이 있음

● 불용액 (不用額)

불용액이란 세출예산에 편성된 금액보다 집행액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말함

회계연도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예산현액(예산액+이월금)에서 실제지출액과 다음 연도의 이월액을 감한 금액으로 나타남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세출예산을 잘못 예측편성하여 집행하는 경우 및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사정의 변경으로 이를 일부만 집행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며 불용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정리되어 처리됨

$$\text{불용액} = \text{예산현액} (\text{전년도이월액} + \text{당해연도세출예산}) - \text{당해연도 지출액} - \text{이월금등} (\text{이월금} + \text{국·도비 집행잔액})$$

● 비용 (費用)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에서 비용이란 자산의 유출이나 감소, 부채의 증가 형태로 나타나는 경제적 이익의 감소를 의미하며 공무원 급여, 소모품 구입비, 차량유지비, 여비, 임차료, 교통비 등이 해당함

● 사고이월 (事故移越)

세출예산 중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

사고이월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함. 여기서 불가피한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을 말하는 것이나 전쟁·사변·동맹파업·태업 등의 인위적 사실도 포함됨

● 사업예산제도(事業豫算制度)

예산을 '품목' 중심으로 운영하는 품목예산제도와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예산을 사업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산출, 결과, 성과 중심의 예산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재정 성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국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예산제도를 말하며, 사업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을 사업예산이라고 함

● 성과주의 예산제도(成果主義 豫算制度)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것으로서 투입중심의 예산제도에 반대되는 개념.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과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사후 달성여부를 측량 및 공개해 구성원의 인사·보수는 물론 예산배정에서 차별을 두는 제도임

예를 들어 거리청소사업의 경우에 투입중심의 예산제도 하에서는 청소부 인건비, 청소 차량 구입비 및 유지비가 예산대로 집행되었는가에 관심을 갖지만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거리청소사업의 성과목표인 "거리환경이 얼마나 깨끗해졌는가"를 평가(청결도, 만족도 등) 하여 다음년도 자원배분에 반영함

● 성별영향평가사업 (性別影響評價事業)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하고 평가해야 할 예산사업을 의미함

최근 3년간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이거나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고, 분석결과 성 불평등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정하고 있음

● 성인지 예산제도 (性認知 豫算制度)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배정하며 집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 性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배려하는 예산제도임

양성평등을 위한 예산제도로 볼 수 있으며 2013년부터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예산서와 결산서에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은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연도 예산에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 수익 (收益)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활동을 통해서 자산이 증가하였거나 부채가 감소하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수익이라 함

지방자치단체는 기업과 같이 교환거래에 의한 수익도 발생하지만 지방세,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비교환적 세입도 수익에 포함됨. 교환거래에 의한 수익에는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익, 자산임대수익 등이 있음

● 세외수입 (稅外收入)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벌어들이는 수입 중에서 지방세수입을 제외한 나머지를 세외수입이라 하며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음

경상적 세외수입이란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매 회계연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가능한 수입으로서 ① 재산임대수입 ② 사용료수입 ③ 수수료수입 ④ 사업수입 ⑤ 징수교부금수입 ⑥ 이자수입 등이 있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주로 공공부분 내부 또는 지방재정 내부에서 단순한 재원이전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세외수입으로 ① 재산매각수입 ② 부담금 ③ 과징금 및 과태료 등 ④ 기타수입 ⑤ 지난연도수입 등이 있음

● 세입 (歲入)

일정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을 위한 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말함.

세입의 주된 재원은 지방세수입이며, 세외수입, 지방채무를 발행하여 조달하는 지방채수입, 지방교부세, 국가나 시·도의 각종 보조금 등이 있음

● 세입세출외현금 (歲入歲出外現金)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된 확정적인 금액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이 성취되면 반환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일시적인 보관금을 말함. 예를 들면 계약·입찰보증금 등의 각종 보증금 같은 것임. 이는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유가증권도 취급 공무원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취급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출납보관하는 자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라 함

세입세출외현금에는 보증금(입찰·계약·하자보증금 등), 보관금(건강보험료, 공제회비, 기여금, 생활용자금, 채권압류, 학자금, 세금, 대한공제 대부,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기타 잡종금(국고사용잔액반환금, 통신요금, 국군장병위문금, 기타잡종금 등)등이 있음

● 세출 (歲出)

한 회계연도 기간에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하며 세출예산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고 있음

● 수의계약 (隨意契約)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법령에 정한 요건에 따라 선정한 특정인을 상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여야 함

수의계약은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시험지 및 비밀문서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4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 가능함

● 순계예산 (純計豫算)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하면 모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음.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는 이유는 재정과 관련된 일체의 수지를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재정 전체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아울러 재정상의 감독을 용이하게 하는데 있음. 그런데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산출한 예산총계규모에는 내부거래(예: 일반회계-특별회계간 중복거래)나 외부거래(광역단체-기초단체 중복거래)로 인하여 동일한 재원이 중복 계상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여기서 중복되는 부분을 차감한 예산순액을 순계예산이라 함

● 순세계잉여금 (純歲計剩餘金)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 중 이월금 및 국·도비 사용잔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세입예산액보다 실제수입이 많은 경우 및 세출예산액보다 실제 적게 지출한 경우(불용)에 발생하게 되며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다음회계연도의 세입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시·도비보조금 (市·道費補助金)

광역단체인 시·도는 시·군·구를 통해 시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시·군·구를 지도·지원하는 기능상 시·군·구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게 됨. 이러한 필요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시·도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구의 재정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할 수 있는데, 이를 시·도비 보조금이라 함

● 시·군 조정교부금 (市·郡 調整交付金)

시·군이 도세를 징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도가 보전해 주어야 함. 또한 지역발전 수준이나 재정여건이 떨어지는 시·군에 대해서는 도의 재정지원이 필요하기도 함

이처럼 도가 도세의 징수비용을 보전해주고 시·군의 재정격차를 완화하며 특정 시책을 장려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재원이 시·군 조정교부금(市·郡 調整交付金)이며 도세 징수실적, 인구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지원하고 있음

● 업무추진비 (業務推進費人)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公務)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지칭함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업무추진비를 직책급·정원가산·기관운영·시책추진·부서운영·의정운영 등을 공통 업무추진비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비용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업무추진비 공개 의무화에 관한 법적 규정은 없으나 2003년 6월 국무총리실은 ‘행정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국무총리 훈령(안)’을 공포하고 중앙부처 등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주요 국책사업과 업무 추진비 등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각 행정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각종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음

● 여성정책추진사업 (女性政策推進事業)

여성가족부가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수립한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년~2017년)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연도별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함

여성장애인 권익증진,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구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자활지원, 이주여성의 정착지원, 성인지교육, 성평등문화 확산, 여성인력 활용, 여성취업 활성화, 여성의 건강보호, 여성복지 증진 등 여성의 일자리와 복지, 그리고 권익보호와 관련된 시책사업이 해당함

● 인건비 (人件費)

근로자의 노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함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란 보수,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등 직접인건비와 연금 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의 간접인건비를 포함하여 관리함

● 예비비 (豫備費)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편성하여야 함

예산은 아무리 정확하게 견적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하며, 실제로 예산집행과정에서 과부족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설치된 제도임

예비비의 계상은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내의 금액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예비비의 사용은 지방의회의 승인없이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얻어 집행할 수 있으며 예비비의 집행결과는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예산 (豫算, budget)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1년)의 회계연도에 수행할 기능과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이를 화폐단위로 표시한 세입세출에 관한 계획서를 말함

일정기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즉 일정기간에 의도하는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얼마나 조달할 것이며 조달된 재원을 여러가지 사업 중에서 어떻게 배분하여 어떠한 성과를 거두겠다는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이자, 이 과정의 결과물을 금액으로 표시한 것임.

● 예산과목 (豫算科目)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해 구분한 것으로 세입예산과목과 세출예산과목이 있으며 세입예산과목은 장, 관, 항, 목으로 구분되고, 세출예산과목은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으로 구분되는데 세출예산과목의 경우 정책사업은 의회의 의결대상이 되는 입법과목이며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은 행정과목으로 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음

● 예산대비 채무비율(豫算對比 債務比率)

예산규모를 기준으로 본 지방채무 규모의 비율을 예산대비 채무비율이라 함

이 지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상환 능력을 점검하기 위하여 운용하는데, 통상 40%를 넘어서면 재정능력에 비해 지방채무가 과도한 수준으로 해석하며 지방채무 감축을 골자로 한 자구노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text{예산대비 채무비율} = \text{지방채무 총규모} / \text{예산규모(최종예산 기준)}$$

$$\text{여기서, 지방채무 총규모} = \text{지방채무 잔액} + \text{채무부담행위 잔액} + \text{보증채무 이행책임액 잔액}$$

$$\text{예산규모} = \text{일반회계} + \text{기타특별회계} + \text{공기업특별회계} + \text{기금}$$

● 예산안의 의결 (豫算案의 議決)

지방의회에서의 심의 확정기간은 시·도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전년도 12월 16일)까지, 시·군 및 자치구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전년도 12월 21일)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함

● 예산의 전용 (豫算의 轉用)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써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라 할 수 있음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게 됨. 따라서 예산을 전용할 때에는 이러한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 이·전용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함

예산의 전용은 행정과목간의 융통이므로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인건비·시설비 및 부대비·상환금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고, 회계연도 경과후에는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 충당을 위한 전용도 불가함

● 예산의 종류 (豫算의 種類)

예산의 종류는 여러가지로 나눌 수 있음

●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

- 일반회계예산 : 국가(지방)의 세입·세출은 일체로서 통일되어야 한다는 '예산 통일의 원칙'에 따른 대부분의 예산
- 특별회계예산 : 국가(지방)의 예산중 특정한 세입으로 충당하며 일반예산과 구분되어 경리되는 예산

●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 본 예산 : 정기국회(지방의회)에서 승인한 정기예산
- 수정예산 : 정부(지방)가 국회(의회)에 예산안 제출 후 국회(의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정부(지방)가 수정하는 것
- 추가경정예산 : 예산이 국회(의회)를 통과하여 성립한 후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과 통산하여 전체로서 집행

● 잠정예산, 가예산, 준예산

- 회계연도 개시까지 예산이 국회의 의결을 받지 못하는 경우 예산 집행하는 방법
- 잠정예산 : 일정기간(최초 4, 5개월)예산의 지출을 허가하는 제도
 - 가 예산 : 잠정예산과 같으나 기간이 1개월로 제한
 - 준 예산 : 예산 불성립시 필수적이고 일상적인 예산을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하는 제도.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음

● 예산의 확정 (豫算의 確定)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의회가 심의하여 법정시한인 회계연도시작 15일전(시·군·구의 경우 10일 전)까지 의결하고 이를 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장은 이를 상급기관에 보고 및 고시하여야 함. 이렇게 확정된 예산은 회계연도 도래(매년 1월 1일)와 함께 집행할 수 있게 됨

● 예산편성한도액 (豫算編成限度額)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원을 체계적으로 배분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기능별·조직별·사업별로 한도액을 설정해놓은 것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단년도 예산 편성 시 기능별·조직별·사업별 예산편성한도액을 초과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

● 예산총계주의 (豫算總計主義)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계상하여 운용하여야 한다는 원칙임

예산총계주의를 준수해야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재정활동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지방의회가 예산과 결산의 심의 과정에서 오류를 잡아내고 시정하도록 하여 합리적인 재정관리가 가능하게 됨. 예산총계주의는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특별회계나 기금은 가급적 운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이전수입 (依存收入)

이전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중에서 국가나 시·도로부터 지원을 받는 수입을 의미함
현행 제도상 이전수입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이 있음

● 일반재원과 특정재원 (一般財源과 特定財源)

일반재원과 특정재원의 구분은 그 비도(費途, 비용의 용도)의 재량성 여부를 기준으로 한 분류로서, 이 중 일반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의사에 따라 어떠한 경비지출 재원으로서도 자유롭게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하며, 특정재원은 국고보조금과 같이 국가(중앙정부)에서 정해진 목적과 기준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하는 재원을 말함

● 일반회계 (一般會計)

일반회계는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회계로서 지역주민의 공공복지 증진 및 공공서비스 충족을 위하여 일반적이고 항구적인 재정활동에 관한 총세입과 총세출을 열거하여 편성한 것으로 자치단체의 고유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자치단체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특히, 자치단체의 기업적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회계에 자치단체의 모든 세입·세출을 포괄하여 계상할 경우 내용이 복잡해지는 문제가 발생함. 또한 특정한 사업이나 자금의 운용실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일이 어렵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리할 수 있음

● 일시차입금 (一時借入金)

자치단체가 자금의 운영과정에서 필요지출액보다 보유잔고가 없어 지출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획된 수입이 발생될 때까지 자금을 외부로부터 조달할 수밖에 없게 됨

이와같이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에 있어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외부로부터 임시로 차입하는 것을 일시차입금이라 하며, 지방재정법에 일시차입을 위해서는 그 한도액을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예산총칙에 포함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

특히 일시차입금은 당해회계연도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하며 지방채와 같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일시적인 지급자금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차입하는 것으로서 당해 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함

● 잉여금 (剩餘金)

잉여금은 결산결과 실제수입총액에서 실제지출총액의 차액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실제수입총액은 세입금의 금고마감일인 1.20일까지의 수납액을 말하며, 실제지출총액이란 출납폐쇄기한인 12월말까지의 지출액을 말함

● 자본지출 (資本支出)

자치단체가 사업주체가 되어 직접 투자사업을 시행하거나 자산을 취득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자본형성적 경비를 지출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목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해당함

● 자산 (資産)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에서 자산이란 행정서비스의 잠재력을 창출하거나 미래의 경제적 이익이 유입될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함

기업과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복리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회계의 실체라는 점을 감안해서 경제적 이익과 함께 행정서비스의 잠재력을 자산으로 간주하며 도로, 공원,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음

● 자체수입 (自體收入)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벌어들이는 수입을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자체수입이라 함

이러한 자체수입은 대부분 자주적인 재정활동에 재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수입이 많은 경우 재정의 자주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자치구 조정교부금 (自治區 調整交付金)

지방세 구조상 자치구가 징수할 수 있는 세목은 동록면허세와 재산세 두 개에 불과하고, 자치구 상호간 재정격차가 커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조정교부금제도를 운용함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특별시 및 광역시의 보통세 일정율로 정하며 보통교부세와 비슷하게 재정부족액(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에 연동하여 교부액을 산정함

● 재정건전화계획 (財政健全化計劃)

행정안전부는 매년 모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분석을 실시하고 있는 바, 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매우 부진한 자치단체는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자구노력을 추진하여야 함

통상 재정건전화계획에는 세입확충, 세출절감, 채무상환,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 등 재정활동 전반에 걸쳐 건전성과 효율성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시책과 목표가 포함됨

● 재정분석 (財政分析)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의 유지·운영 및 주민이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 등 재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고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장이 작성·제출한 재정보고서를 기초로 재정현황과 운용실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음

크게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 3개 영역으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영역에는 이를 대표하는 지표를 배치하여 분석하고 있음. 동종 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별로 당해 자치단체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진단하며 지방재정 전반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제도개선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 재정자립도 (財政自立度)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하여 파악하고 있음

재정자립도는 특성상 자치단체의 수입 중 스스로 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스스로 벌어들일 수 있는 재정능력이 낮은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력의 확충의 측면에서 보면 자립도는 향상될 필요가 있음

$$\text{재정자립도} = \frac{\text{자체수입(지방세 + 세외수입)}}{\text{일반회계 예산규모}}$$

● 재정자주도 (財政自主度)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등 자치단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자주재원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임

재정자립도가 재원조달면에서 자립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재정자주도는 재원 사용면에서 자주권, 자율권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음

$$\text{재정자주도} = (\text{자체수입} + \text{자주재원}) / \text{일반회계 예산규모}$$

$$\text{여기서, 자주재원} = \text{지방교부세} + \text{조정교부금}$$

● 재정진단 (財政診斷)

재정분석 결과 재정현황과 운용실태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여 부실한 경우 구조적 원인과 위험의 정도, 채무관리상황 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조사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

그러나 재정진단은 재정부실의 현상과 원인만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밀분석 결과 재정건전화계획 수립과 이행이라는 처방과 치료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된 단체에 대하여 그 원인을 파악하여 치유 과정을 거쳐 재정위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계기가 됨

● 조세지출예산제도 (租稅支出豫算制度)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조세지출예산제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액수로 비과세, 감면, 공제 등 세제상의 각종 유인 장치를 통해 표기된 액수를 말함

비과세, 감면, 공제 등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따라서 보조금을 엄정히 관리하고 성과를 측정한다는 차원에서 비과세, 감면, 공제의 종류와 종류별 액수, 그리고 성과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고자 조세지출예산제도를 운용하는 것임

● 주민참여예산제도 (住民參與豫算制度)

주민이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사업의 예산이나 우선순위 등에 간여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지방예산이 운용되도록 2011년에 도입한 제도임

주민참여 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의 방식으로도 참여가 가능함

● 중기지방재정계획 (中期地方財政計劃)

중기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편성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및 시기를 검토함으로써 자원배분의 일관성, 효율성, 건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지방채의 발행,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등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장치를 운영하고 있음

● 지방공기업 (地方公企業)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직영기업과 별도의 독립 법인체를 설립하는 공사, 공단이 있음

지방공사(地方公社)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수도사업(간이상수도 사업을 제외),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에 한함),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의료사업 등을 영위하고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업

● 지방교부세 (地方交付稅)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중앙정부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자치구 제외)에 교부하는 재원으로로서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규정하고 있음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공동세(共同稅) 성격을 갖는다는 평가도 있음

지방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충해 준다는 측면에서 재원보장 기능을 수행하며 다른 한편으로 지방간 재정의 불균형을 시정한다는 측면에서 재정형평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그 용도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달지 않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며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등이 있음

보통교부세는 재정부족액(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을 자치단체별로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교부액을 확정하며 이 과정에서 재정여건이 불리한 자치단체에 더 교부되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운영하고 있음

특별교부세는 재해복구, 현안사업의 적기 추진 등을 목적으로 운용하며 분권교부세는 사회복지사무 등 지방에 이양된 국가사무의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재원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地方教育財政交付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재원을 이전하는 제도로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설치·경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필요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부세와 비슷하게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조성하며 이 역시 교육여건을 대표하는 재정수요를 파악하여 교부하고 있음

● 지방세 (地方稅)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과징하는 세제로써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국세와 구별됨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세와 시·군·구세로 구분되며, 그 수입의 용도에 따라 재원별로 구분하여 일반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보통세라 하며 특정한 사업을 위한 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목적세라 하는데,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목적세에 해당함

도세는 6개 세목(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시·군세는 5개 세목(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광역시세는 9개 세목(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자치구는 2개 세목(등록면허세, 재산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지방의회경비 (地方議會經費)

지방의회의 기관운영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말함

의정운영 공통경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원 국외여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경비의 예산편성 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별도로 마련하고 있음. 예를 들어 지방의원 국외여비는 지방의원 인원비례로 산출함

- 지방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 운영기준(2016년 기준) -

구 분	산 출 방 법
시 · 도 시 · 군 · 자치구	의원정수 × 2,000천원(기준액) * 기준액의 25%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

● 지방재정조정제도 (地方財政調整制度)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상위정부인 중앙정부(혹은 광역자치단체)에서 하위 지방정부(혹은 기초자치단체)로 일정규모의 재원을 이전하여 정부간 재정형평성을 제고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과급효과(spill-over effect)가 큰 지역공공재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제도임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재원과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전되는 재원으로 구분됨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재원에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이 있고,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전되는 재원으로는 조정교부금, 시·도비 보조금이 있음

● 지방채 (地方債, local bond)

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부족액을 보충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조달하는 채무이며 지방채증권과 차입금이 있음

지방채증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조달한 것으로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등이 해당함. 차입금은 금융기관, 중앙정부, 국제기구 등에서 차입하는 것을 말함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①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② 당해 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사업, ③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④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⑤ 기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⑥ 그 밖에 주민이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한정하며 경상경비 목적의 지방채발행은 금지하고 있음

지방채발행 한도제의 도입('06. 1. 1.)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지방채 발행계획 (地方債 發行計劃)

지방재정운용의 계획성 제고와 채무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채발행 총액 한도액 범위와 관계없이 다음연도 발행예정인 지방채는 「지방채발행수립기준」에 의거하여 지방채발행계획을 매년 8월말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야 함

● 지방채발행 한도액 (地方債發行 限度額)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없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범위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지방채발행액, 채무부담행위액,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채무자의 파산으로 해당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을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예산액의 10% 범위 내에서 채무규모,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매년 7월 15일까지 다음연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통보하고 있음

● 지출결의서 (支出決議書)

결의서의 작성은 지출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조사·결정하여 지급명령을 발행하기 위해 의사를 결정하는 서류임. 결의서에 첨부되는 서류는 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첨부한 집행품의서, 계약서 등임

● 지출원인행위 (支出原因行爲)

지출원인행위란 세출예산(계속비·채무부담행위 등 포함)에 대하여 자치단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이미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채무에 대한 지출을 확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지출부담행위라고도 표현함

지출원인행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불의 의무를 지는 예산집행의 첫 단계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제조 등의 도급계약 또는 물품의 구입계약과 같은 사법상의 채무를 지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의 지불 결정행위, 급여 기타 급부의 결정 등이 포함됨

지출원인행위제도는 세출예산의 집행을 지출단계 이전부터 통제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으로 법령·조례·규칙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함

● 채권 (債權)

채권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말하며 적용제외채권을 제외한 모든 채권, 주로 사법상의 원인(계약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은 모두 관리대상임. 채권은 목적 및 성격을 기준으로 보증금채권, 융자금채권, 미수금채권, 기타 채권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9조에 의한 적용제외 채권은 과태료, 체납처분에 관한 채권, 보조금 또는 기부금에 관한 채권 등이 있음

● 채무부담행위 (債務負擔行爲)

지방자치단체가 금전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말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그 밖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단,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것이나 세출예산·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 범위안의 것은 제외됨

● 총계예산 (總計豫算)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편성·운영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외형적 예산규모로써 예산서상의 수치를 단순합산 통계한 규모를 말함

● 추가경정예산 (追加更定豫算, supplementary budget)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임. 예산의 부족은 예비비로 충당하게 되어 있으나 그 부족액이 다액인 경우에는 추가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게 됨

본예산에 금액만을 증가하는 추가예산과 내용만을 변경하는 경정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예산 전체적으로 볼 때 추가나 경정예산만이 성립되는 경우는 없고 추가와 경정이 동시에 요구되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함. 추가경정예산편성으로 예산의 집행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남용되면 재정팽창의 요인이 됨

● 추가경정예산 편성요인

- 전년도 예산의 집행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 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경우
-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등 국가에서 예산을 추가지원하고 지방비 예산을 추가확보하여 사업을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기채등 지방채의 추가발행 승인을 받았거나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특정재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이미 편성된 예산중 사업집행등 경비집행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출납폐쇄기한 (出納閉鎖期限)

회계연도 경과후 당해연도간의 세입 세출에 관하여 그 출납사무의 완결을 위한 일정한 유예기간을 인정하는 것이며, 당해년도 12월말을 출납폐쇄기한으로 함

지방자치단체가 출납폐쇄기한 이내에 출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음

i) 지출원의 정산지출 ii) 수입금출납원의 세입금 수납 iii) 전도자금출납원 또는 금고의 세출금 지급

다만 수입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하는 경우는 출납폐쇄기한에서 20일을 더 연장하고 있음

● 출연금 (出捐金)

출연금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 법령에 근거하여 민간에게 반대 급부없이 금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재정지원을 말함 ● 출자금 (出資金)

출자금이란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출자자로서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본에 대한 금전적 급부행위를 말함. 정부(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 또는 민간경제 운용상 필요한 사업을 운용하는 민간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재정에서 출자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출자를 하는 경우 전체 출자액(자본금)에 대한 출자자의 소유출자 비율 즉, 출자지분을 가지며 이에 따라 정부는 이자배당 등 출자수익을 얻음

● 최저수입수입보장(MRG : Minimum Revenue Guarantee)

민간사업자가 지은 시설이 운영단계에 들어갔을 때 실제수입이 추정수입보다 적으면 민간사업자에게 사전에 약정한 최소수입을 보장하는 제도임

일반적으로 BTO와 같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에서 적용하며 민간투자사업자의 수입이 최소수입수입보장액 보다 적을 경우에는 정부가 그 차액을 보전해야 함

● 통합재정수지(統合財政收支)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망라하여 총세입(순계예산)에서 총세출을 차감한 수치로 재정의 적자 또는 흑자규모를 의미함

▶ 통합재정규모 : 지방자치단체의 1년 동안 총지출규모에서 채무상환 등 보전지출을 차감한 순수재정활동 규모

● 투자사업 심사 (投資事業 審査)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지방재정법에 기초한 지방재정 투자 사업심사를 거쳐야 함

투자 사업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역주민, 지방의회의 공개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하여 심사의 내실을 기하여야 함

● 특별교부세 (特別交付稅)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자치단체별 구체적인 사정, 지방재정 여건 변동, 각종재해, 공공복지시설의 복구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교부세를 말함

객관성과 통일성을 중시하는 보통교부세 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획일성과 일회성을 보완하여 지방교부세제도 전체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 특별회계 (特別會計)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특별회계의 종류는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가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법 제2조에서 정한 상·하수도, 도시철도, 청소, 주택, 의료, 시장등 사업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이상의 사업에 한하여 적용되며, 기타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로 의료보호, 토지구획정리, 영세민생활안정 등 다수의 사업에 적용되고 있음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일반회계와 독립적으로 경리하므로써 사업의 성과와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할 뿐아니라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수지와 손실을 명백히 하는 데 기본취지가 있다고 하겠으나 너무 많이 설치되면 그 운영이 방만하여 예산통제에 어려움이 있어 오히려 능률이 저하될 수도 있음

● 품목별 예산 (品目別 豫算, line-item budgeting)

지출의 대상과 성질을 기준으로 하여 세출예산의 금액을 나타내는 예산임

예산집행에 대한 회계척임을 명백히 하고 공무원의 재량을 제한함으로써 부패방지과 능률향상 등 경비지출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지만 정부의 활동이나 사업계획을 나타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음(예산지출통제목적)

● 회계 (會計)

회계란 재정활동의 일부로서 금전, 물품, 기타재산 등의 출납과 보관·관리 등 유용한 재무정보(회계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기록하여 그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는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임

● 회계연도 (會計年度)

회계연도라 함은 일반적으로 회계상의 정리기술면에서 편의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수치상황을 명확히 하는 예산의 기간 단위라 할 수 있음. 세입과 세출상황을 명확히 하고 재정을 통제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기간으로 예산의 유효기간을 말함. 예산은 이 기간을 단위로 하여 편성되고 예산의 집행 및 결산도 이 기간마다 구분 정리되는 것임

회계연도는 보통 1년을 주기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하도록 되어 있음

● 각국의 회계연도

1월~ 12월말 : 한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네덜란드

3월~익년 2월말 : 터키

4월~익년 3월말 : 일본, 영국, 캐나다, 인도 등

7월~익년 6월말 : 필리핀,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의 주

10월~익년 9월말 : 미국연방정부 등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會計年度 獨立의 原則)

각 회계연도에 있어서 지출되어야 할 경비의 재원은 그 연도의 수입으로 조달되고 당해연도에 지출되어야 할 경비는 타 연도에서 지출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임

이 원칙의 예외로서 명시·사고이월비, 계속비의 수년도에 걸친 지출, 당해연도의 부족수입을 익년도 세입으로 충당하는 당겨쓰기,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을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각각 지출한 세출과목에 반납하는 지난회계연도 수입, 과년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 등을 현년도에 지출하는 지난회계연도 지출이 있음

지방재정공시 표준화면 가이드

- 공시접근성 강화 81
- 화면구성 및 표현방식 83

1 공시접근성 강화

- ☐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바로가기 링크, 재정공시 메뉴접근 단계 최소화
 - ▶ 재정공시 바로가기 링크 등 지역주민 및 수요자 접근성 강화

☞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바로가기 링크 제공

The screenshot shows the Jindo City website homepage. At the top, there is a search bar with the text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and a yellow callout box labeled "접근성 강화" pointing to the search icon. Below the search bar is a horizontal navigation menu with items: "전자민원", "진도소개", "군정소식", "참여마당", "정보공개", "분야별정보", "사이트맵", and "검색".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several banners and a table of notices. A yellow callout box labeled "바로가기 기능" points to a row of service icons at the bottom. The icons include: "자주찾는 서비스", "조직도", "청사안내", "예산현황", "공직/선거 비리이력신고", "계약정보공개", "자유게시판", "숙박", "음식", "교통", "재래시장", "관광지도", "철마도서관", "진도관광협의회", and "자치법규".

☞ 메뉴접근 단계 최소화 : HOME > 재정공시 (1단계)

로그인     인쇄  화면 + -

관광문화 | 열린군수실 | 군의회 | global ▾

대한민국
민속문화예술특구 **Jindo** 진도군

전자민원	진도소개	군정소식	참여마당	정보공개	분야별정보	사이트맵	검색
------	------	------	------	------	-------	------	----

정보공개	재정현황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실명제	행정규제개혁	지방공기업
정보공개개요	예산현황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실명제	행정규제개혁개요	지방공기업이란
사전정보공표	단계 최소화	공공저작물		행정규제등록서	지방공기업현황 
정보공개편람	새로  재정정보공개 			행정규제신고센터	지방공기업경영정보 
정보공개청구 	재정공시				
정보공개목록 	중기지방재정계획				
비공개대상목록	공공시설 운영현황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재정용어사전				
감사	행정정보				
청렴진도	조직정보공개				
감사결과공개					



연세 **20,219**명
기탁중 입니다.

기탁 현황보기 

시설이용안내


자세히보기 

정보화교육

자세히보기 

자유게시판

자세히보기 

 사진으로 보는 진도 새소식



2 화면구성 및 주민소통 원활화

- 연도별, 공시기준 및 분류별로 화면을 구성하고, 홈페이지에서 재정공시 내용을 바로 확인 가능하도록 표현하여 재정정보의 비교분석 및 전달성 제고

연도별, 공시기준 및 분류별로 화면을 구성하여 한눈에 보기 용이함

대한민국 Jindo 진도군

관공문과 | 열린군수실 | 군의회 | global

전자민원 | 진도소개 | 군정소식 | 참여마당 | 정보공개 | 분야별정보 | 사이트맵 | 검색

정보공개 | 재정현황 | 재정공시

재정공시

▶ 재정공시제도란?

- 재정공시한 재정운영의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줌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또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2015년부터 예산공시 확대추진)
- 재정공시의 관련하여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기획예산과 예산담당 | 전화번호 : 061-540-3025

유사단체 자료검색(재정 365)

재정고 등합공시 바로가기

표현방식

재정공시	다운로드
2019년 예산기준 재정공시	PDF 다운로드 ↓ HWP 다운로드 ↓
2018년 결산기준 수시공시	PDF 다운로드 ↓ HWP 다운로드 ↓
2018년 결산기준 재정공시	PDF 다운로드 ↓ HWP 다운로드 ↓
2018년 예산기준 재정공시	PDF 다운로드 ↓ HWP 다운로드 ↓
2017년 결산기준 재정공시	PDF 다운로드 ↓
2017년 예산기준 재정공시	PDF 다운로드 ↓ HWP 다운로드 ↓
2016년 결산기준 재정공시	PDF 다운로드 ↓ HWP 다운로드 ↓
2016년 예산기준 재정공시	PDF 다운로드 ↓ HWP 다운로드 ↓

☞ 홈페이지에 주민소통을 위한 메뉴 마련

로그인

인쇄

화면
+
-

관광문화
열린군수실
군의회
global

대한민국 Jindo 진도군
민속문화예술특구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전자민원
진도소개
군정소식
참여마당
정보공개
분야별정보
사이트맵
검색

🏠 참여마당
정책참여
⌵ 주민참여 예산
⌵

주민참여 예산

주민참여 예산제

예산편성에 바뀐다

주민소통

▶ 주민참여예산제 신청서식

주민참여예산제 신청서식 다운로드

진도군에서는 원활한 서비스 이용과 익명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대폰인증/G-PIN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팝업창이 나타나지 않으면 브라우저의 팝업차단을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SMS 인증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휴대폰번호 대신 가상식별번호를 부여 받아 활용합니다. 본인인증을 하시더라도 휴대폰번호는 일체 저장되지 않으며 기타 개인정보는 진도군 개인정보보호방침에 의거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G-PIN 인증

공공아이핀(G-PIN)은 인터넷상의 개인 식별번호를 의미하며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수단으로 행정자치부의 서비스를 연계해서 활동합니다.
(공공아이핀 : www.G-PIN.GO.KR)